

『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5월 1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함(안 제3조).
-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「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(부칙안 제2조)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화운동”이란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」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4·19혁명, 6·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·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기념사업) 인천광역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
2.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·계승사업
3.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·전시·편찬사업
4.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기념사업의 지원) ①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「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·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 등)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